

후 계 농 어 업 인 및 청 년 농 어 업 인
육 성 · 지 원 법 시 행 규 칙 제 정 안

2021. 3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경 영 인 력 과)

1. 제정이유
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(법률 제17287호)」이 2020.5.19. 제정되어 2021.5.20.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(안 제2조)
-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요건 등 실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본 조건 규정(안 제3조)
-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, 선정 예외 사유 및 시·도 지사의선정 권한 등 규정(안 제4조)
-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은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해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금(해수부:청년어촌정착지원금)의 사용 용도,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3. ~ 4.)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사항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(이하 "후계농어업경영인등"이라 한다)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5분의1 이상을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제3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요건, 절차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"후계농어업인"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

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다.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

라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“후계농어업경영인 심사위원회”의 심사를 통해 선정

3. 지원 내용 :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자금,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 (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청년농어업인” 중 독립 영농·영어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독립경영 예정이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다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사업대상자를 평가하고 최종 선정

3. 지원 내용 :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정착지원금 및 농지, 자금, 기술 등 농림어업사업 연계 지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정착지원금의 지원 조건 및 용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는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등으로만 정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정착지원금 지원 조건 및 사용 가능 업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정착지원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등) ①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·영어에 종사할 것

2. 제1호의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·영어에 종사할 것

3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리·점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행규칙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 시 우대사항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(이하 "후계농어업경영인등"이라 한다)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5분의1 이상을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</u>

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요건, 절차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후계농어업인”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다.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라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“후계농어업경영인 심사위원회”

<신 설>

의 심사를 통해 선정

3. 지원 내용 :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자금,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 (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등)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선정요건 : 법 제2조제1호의 “청년농어업인” 중 독립 영농·영어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독립경영 예정이며, 다음 각 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

가.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수산물을 생산, 판매, 가공하거나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선정 가능

<신 설>

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
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
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
자

다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
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
외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절차 : 시·도지사는 평가위원회를
구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
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
사업대상자를 평가하고 최종 선정

3. 지원 내용 : 청년창업형 후계농어
업경영인의 정착지원금 및 농지,
자금, 기술 등 농림어업사업 연계
지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
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을 위
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
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
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
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정착지원금의 지원 조건 및 용
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해양수산부장관은 정착지원금 지급
대상의 소득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

<신 설>

원할 수 있다.

②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는 농어
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등으로
만 정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정착지
원금 지원 조건 및 사용 가능 업종
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
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정착지원금 수령자의 의무사항
등) ①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자
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 지급 기
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의무적으
로 영농·영어에 종사할 것

2. 제1호의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
농·영어에 종사할 것

3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
산부장관이 정하는 의무교육 과정
을 이수할 것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
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은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금의 적
정 사용여부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
등에 대해 관리·점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